

합병·분할의 개념과 법인세 과세체계

- 국세청, 2024. 2

I 합병

1 합병의 개념 등

1. 합병의 개념

기업규모의 확장·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상법상의 절차에 따라 당사자인 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산하고 그 재산은 청산절차 없이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회사 간의 법률행위를 말함

"합병"이란 두 개 이상의 회사가 상법의 절차에 따라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쳐지면서 최소한 한 개 이상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되, 합병 이후에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해 신설되는 회사가 소멸하는 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그의 사원을 수용하는 상법상의 법률사실을 말한다(법인세법 집행기준 44-0-1).

합병은 권리·의무의 포괄승계와 사원의 수용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회사의 영업 전부를 다른 회사에 양도하는 영업양도와 다르다.

판례 대법원 2008두8314, 2008.8.21.

회사의 합병이란 법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하는 회사 간의 행위로서 당사자인 회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산하고, 별도의 개별적인 이전행위 없이 합병등기에 의하여 그 재산이 포괄적으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게 이전하는 것으로서, 두 개 이상의 회사가 법에서 정해진 절차에 의하여 단일 회사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회사의 계속성을 위하여 해산회사는 청산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고 당연히 소멸되는 것인 반면, 영업양도는 계약에 의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개별적인 이전행위에 의하여 재산의 이전효과가 발생하는 특정 승계이고 재산의 일부를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으며 영업양도 후에도 양도한 법인 또는 개인기업이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는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합병과 영업양도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개념임

2. 합병의 유형

합병은 합병당사법인의 소멸 여부에 따라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으로 구분되며, 「상법」상 합병절차의 간소화 정도에 따라 일반합병, 간이합병, 소규모합병으로, 합병대가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주식에 따라 일반합병과 삼각합병으로 구분됨

첫째, 합병은 합병당사법인(회사)의 소멸 여부에 따라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으로 구분된다.

"흡수합병"이란 어느 하나의 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되면서 흡수되는 법인이 소멸하고 소멸법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존속법인으로 포괄 이전되며, 소멸법인은 별도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멸하는 형태의 합병을 말한다.

이 경우 존속법인을 합병법인이라 하고 소멸법인은 피합병법인이라 하며, 소멸법인의 주주는 존속법인의 주식 또는 합병교부재산을 받게 된다.

"신설합병"이란 2개 이상의 합병당사법인이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합병당사법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이전하고, 합병당사법인은 별도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멸하는 형태의 합병을 말한다.

이 경우 소멸되는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는 신설법인의 주식 또는 합병교부재산을 받게 된다.

① 흡수합병

합병법인	+	피합병법인(소멸)	⇒	합병법인
A법인		B법인		A법인

② 신설합병

피합병법인(소멸)	+	피합병법인(소멸)	⇒	합병법인(신설)
A법인		B법인		C법인

둘째, 합병은 「상법」상 합병절차의 간소화 정도에 따라 일반합병, 간이합병, 소규모합병으로 구분된다.

일반합병은 반드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합병계약서에 대한 승인을 얻어야 하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간이합병(「상법」제527조의2)은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전체 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소멸하는 회사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 승인만으로 합병이 가능하다.

소규모합병(「상법」제527조의3)은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 승인만으로 합병이 가능하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

에 그 금액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소규모합병으로 인정되며,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공고 또는 통지일로부터 2주내에 서면으로 합병 반대의사를 통지할 경우에는 소규모합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셋째, 합병은 합병대가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주식이 합병 당사법인의 주식(신주 또는 자기주식)인 경우에는 일반합병, 합병당사법인의 모회사의 주식인 경우에는 삼각합병으로 구분된다.

3. 합병의 절차

합병의 주요 절차로는 ① 합병계약서 작성 및 승인 결의 → ②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 ③ 채권자 보호 절차 → ④ 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 → ⑤ 합병등기 등이 있음

가. 합병계약서와 그 승인 결의(「상법」제522조 및 제522조의2)

합병당사법인 간에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합병 조건,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의 정관의 내용을 정하고, 각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승인 결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승인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합병승인 결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합병계약서, 각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나.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상법」제522조의3)

합병 결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가 있는 때에는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가 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간이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주주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공고 및 통지 생략)하여야 하며, 해당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 채권자 보호 절차(「상법」제527조의5)

주주총회 등의 합병승인 결의가 있는 날부터 2주 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라. 흡수합병의 보고총회 또는 신설합병의 창립총회(「상법」제526조 및 제527조)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채권자 보호 절차의 종료 등 「상법」제526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종료된 후 지체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상법」제527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종료된 후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마. 합병등기(「상법」제528조)

흡수합병의 경우 보고총회 종결일 또는 보고에 갈음하는 공고일, 신설합병의 경우 창립총회 종결일 또는 보고에 갈음하는 공고일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내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합병에 따라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합병의 효력은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합병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합병의 본질

법률적 개념으로 합병의 본질은 인격이 결합하는 것으로 보는 "인격승계설"과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합병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현물출자설"로 구별됨

가. 인격승계설

"인격승계설"은 피합병법인의 인격이 합병법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피합병법인의 인격에 속하는 권리·의무 관계인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 및 자본이 그대로 합병법인에 승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자산·부채의 평가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하고,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은 그대로 합병법인의 자기자본으로 계상된다.

현행 세법은 법 제44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격승계설에 더 근접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 현물출자설

"현물출자설"은 해산하는 회사를 현물출자하여 존속회사의 자본을 증가(흡수합병)하거나 새로운 회사를 설립(신설합병)하는 것으로서, 현물출자설에 의할 경우 합병은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존속·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해 피합병법인이 자산과 부채를 합병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받는 것이며 합병법인은 자산과 부채를 구입하는 대가로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것이다.

따라서 합병법인은 해당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여 장부에 계상하고 합병대가와의 차이는 합병차익 또는 영업권으로 처리한다.

현행 세법은 비적격합병에 대하여 현물출자설에 더 근접하여 규정하고 있다.

2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체계

1. 연혁

2010년 6월 30일 이전 합병은 인격의 승계로 보아 청산소득 및 합병평가차익에 대하여 과세하였으나, 2010년 7월 1일 이후 합병은 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손익에 대한 과세체계로 개편하였음

2009년 글로벌 경기 침체 하에서 경제체질 개선 및 금융부실 확산 방지 등을 위한 구조조정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합병·분할 등 상시적 조직재편 지원 세제를 정비하여 조직재편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합병·분할 등 구조조정 과세체계를 대폭 개선하였으며, 2010년 7월 1일 이후 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새로운 과세체계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2009년 8월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보도자료

3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지원 : 기업 인수합병(M&A) 세제 선진화

□ 최근 다양화된 인수합병(M&A)에 대하여 세금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인수합병 세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편

○ 주식의 포괄적 교환¹;이전, 자산의 포괄적 양도 등 새로운 형태의 인수합병에 대해서도 합병세제* 적용

* 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기업 동일성이 유지되는 조건으로 청산 법인세, 배당소득세 등을 과세이연하는 제도

○ 현행 합병²;분할 과세체계를 부분 과세이연(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한정)에서 완전 과세이연(모든 자산)으로 전환

○ 기업 간 전략적 제휴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자본확충 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기술³;부동산 등 현물출자시 과세이연 범위를 확대

* 설립시 한정 → 증자도 허용,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한정 → 모든 자산으로 확대

종전에는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을 통해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자산의 가치증가분(미실현이익)이 실현되었다고 보고 피합병법인은 청산소득으로 하여 일반소득과 구분하여 과세하되, 특례요건 충족 시 합병대가 중 합병교부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를 최소화하였다.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 합병대가 총계(합병교부금 + 합병교부주식 + 포함주식)
 -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 총액

- * 합병교부주식 평가 : (비특례) 시가, (특례) 액면가액
- * 포함주식 : 합병일 전 2년내 합병법인이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하되, 특례요건 충족 시 합병대가 중 합병교부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를 최소화하였다.

의제배당소득 = 합병대가(합병교부금 + 합병교부주식) -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 * 합병교부주식 평가 : (비특례) 시가, (특례) 액면가액

합병법인은 합병차익 중 합병평가차익에 대해 과세하되, 특례요건 충족 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에 한하여 과세 이연을 적용하며, 과세 이연은 압축기장충당금(토지), 일시상각충당금(감가상각자산)을 설정하고 자산 처분 또는 감가상각시 충당금과 상계하도록 하였다.

합병평가차익 = 자산 승계가액 - 피합병법인의 자산 장부가액 -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 * 합병차익 범위 내에서 합병평가차익 익금산입

2010.6.30. 이전 합병 과세체계

피합병법인	→	청산소득으로 과세 * 청산소득 = 합병대가 총계 - 피합병법인 자기자본 총액(합병대가는 시가로 평가하되, 특례합병시 합병신주를 액면가액으로 평가)
피합병법인 주주	→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 * 의제배당소득 = 합병대가 -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합병대가는 시가로 평가하되, 특례합병시 합병신주를 액면가액으로 평가)
합병법인	→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 * 합병평가차익 = 자산 승계가액 - 피합병법인의 자산 장부가액 -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합병평가차익은 합병차익 범위 내 익금산입하되, 특례합병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충당금을 설정하여 과세이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전의 과세체계는 피합병법인의 경우 합병을 청산으로 보아 청산소득을 별도로 산정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구분하여 과세하고, 청산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합병법인 단계에서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하도록 하였으며, 청산소득 및 합병평가차익을 각각 과세하는 과정에서 합병당사법인이 이중으로 과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정하는

등 과세 체계가 복잡하고 다단계로 이루어졌었다.

아울러, 특례요건 충족 시 합병시점에서 비과세되도록 합병교부주식을 경제적 실질과는 관계 없는 '액면가액'으로 평가하는 우회적 방식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10년 7월 1일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는 미국, 일본 등의 과세체계와 같이 합병을 자산의 유상 양도로 보아 취득법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게 대가를 받고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도록 과세체계를 개편하였으며, 2010년 7월 1일 전·후 합병 시 합병당사자별 과세체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2010.7.1. 전·후 합병당사자별 과세체계		
구 분	2010.6.30. 이전 합병	2010.7.1. 이후 합병
피합병 법인	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① 양도손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합병법인으로 부터 받은 양도가액 - 순자산장부가액)
피합병 법인의 주주	① 합병대가에 대한 의제배당 ㉠ 과세이연요건 충족 시 합병대가로 받은 주식의 평가 : 액면가액 ㉡ 과세이연요건 미충족 시 합병 대가로 받은 주식의 평가 : 시가 ② 불공정합병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증여세 과세	① 합병대가에 대한 의제배당 ㉠ 적격합병 요건 충족 시 합병대가로 받은 주식의 평가 : 장부가액(취득가액) ㉡ 적격합병 요건 미충족 시 합병대가로 받은 주식의 평가 : 시가 ② 불공정합병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증여세 과세
합병 법인	① 합병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②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 ③ 준비금 등 세무조정사항 및 공제·감면세액 승계	① 합병매수차손익(순자산시가 - 양도가액) 과세 ㉠ (순자산시가 > 양도가액) 5년간 균등 익금산입 ㉡ (순자산시가 < 양도가액) 5년간 균등 손금산입 ② 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 ③ 적격합병 시 준비금 등 세무조정사항 및 공제·감면세액 승계
합병 법인의 주주	① 합병차익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② 불공정합병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증여세 과세	① 합병차익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② 불공정합병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증여세 과세



2. 기본 과세체계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은 합병에 따른 자산의 양도손익, 합병법인은 합병매수차손익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고, 피합병법인 주주에 대하여는 의제배당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가.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 과세체계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은 자산과 부채를 합병법인에게 이전시키고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에게 합병대가를 지급한다.

이 경우 피합병법인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와 순자산 장부가액의 차액을 양도손익으로 과세한다.

$$\text{양도손익} = \text{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 \text{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나. 합병법인의 합병매수차손익 과세체계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아 합병매수차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합병법인의 합병매수차손익은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text{합병매수차손익} = \text{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시가} - \text{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

다.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체계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피합병법인의 구주식을 반납하고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법인의 주식(또는 그 모법인의 주식)와 교부금 등 합병대가를 받게 된다.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은 합병대와 구주식의 취득가액의 차액을 의제배당으로 과세한다.

의제배당 =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시가) -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구주식의 취득가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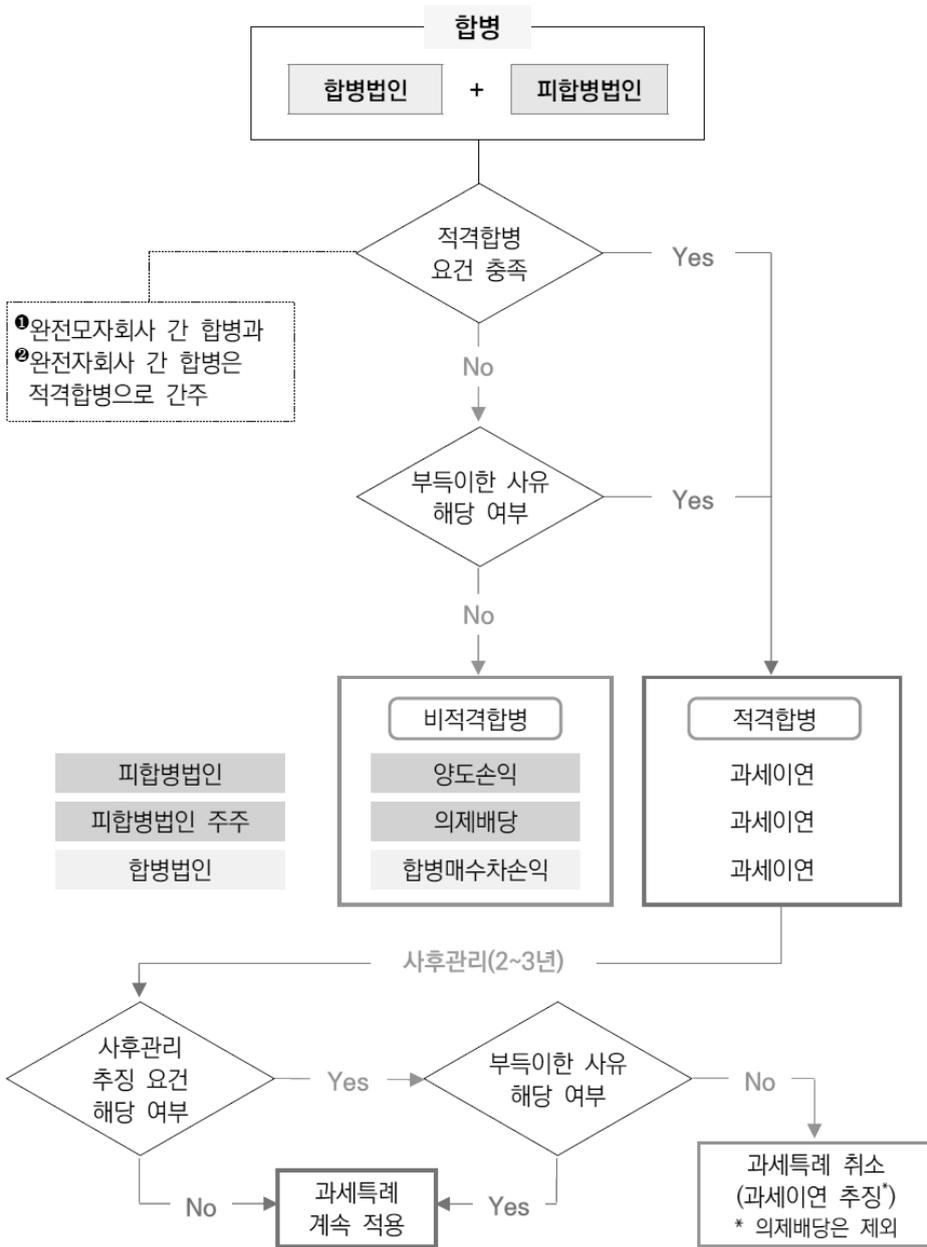
라. 적격합병에 따른 특례

적격합병 요건 충족 시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 피합병법인 주주의 의제배당 및 합병법인의 합병매수차손익을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를 이연한다.

따라서 적격합병 시에는 합병시점에 과세하지 않고, 합병시점 이후로 과세를 이연할 수 있다.
합병 과세체계 요약

합병 과세체계 요약		구 분	비적격합병(원칙)	적격합병(특례)
		피합병법인	* 양도가액 = 합병대가	양도손익 과세 = 양도가액* - 순자산 장부가액(자산-부채) 양도가액 = 순자산 장부가액 - 순자산 장부가액 ⇒ 양도손익 = 0
		피합병법인의 주주	의제배당 과세 = 합병대가* - 구주식의 취득가액 * 주식으로 받은 경우 : 시가	주식으로 받은 경우 합병대가 = 구주식의 취득가액 ⇒ 의제배당 = 0
합병 법인	자산승계	시가로 승계		장부가액으로 승계 * 시가와와의 차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 후 해당자산의 처분·감가상각 시까지 과세이연
	결손금, 세무조정사항 등	승계 불가(단, 퇴직급여충당금·대손충당금 관련사항은 승계 가능)		승계 가능
	합병매수차 손익	과세(5년간 균등분할 손익 인식)		미발생

<합병 과세체계 요약>



II 분할

1 분할의 개념 등

1. 분할의 개념

회사의 영업을 둘 이상으로 분리하고 분리된 영업재산을 자본으로 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등의 법률행위를 말하며, 인적분할과 물적분할로 구분됨

"분할"이란 회사가 회사의 재산, 사원 등 일부분을 분리하여 다른 회사에 출자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함으로써 한 회사를 복수의 회사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법인세법 집행기준 46-0-1).

대량 생산체제에 있어서 기업은 원가 절감, 생산과 관리의 효율화, 기업의 사회적 지위강화 등을 위하여 자기 기업의 설비나 시장을 더 확대하는 것보다 다른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단기간에 외적 성장을 달성하려는 전략을 선택하여 인수·합병을 통한 기업의 대형화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모 확대를 통한 경제력 집중이 오히려 비효율적이거나 경영 여건의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기업은 기업분할을 통하여 전문화·독립화·효율화를 추구하게 된다.

2. 분할의 유형

분할은 분할 형태에 따른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으로 구분되며, 분할대가 교부 형태에 따른 인적분할과 물적분할로 구분됨

가. 단순분할과 분할합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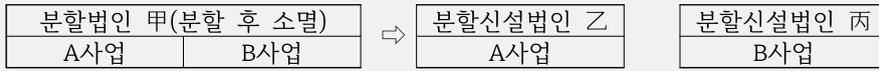
"단순분할"이란 여러 사업부문을 가진 법인이 일부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출자하여 1개 또는 수개의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자산과 부채를 출자한 법인을 '분할법인'이라 하고 분할로 인하여 새로이 설립하는 법인을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

단순분할은 분할법인이 분할 후 존속하는 '존속분할'과 분할법인이 분할 후 소멸하는 '소멸분할'로 구분된다.

① 분할법인이 분할 후 존속하는 경우(존속분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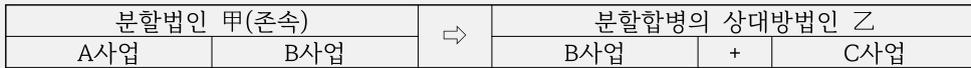


② 분할법인이 분할 후 소멸하는 경우(소멸분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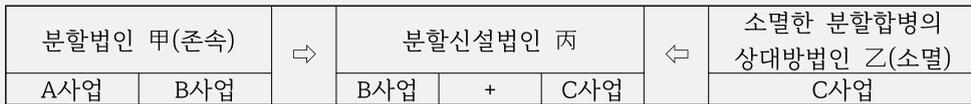


"분할합병"이란 일부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1개 또는 수개의 기존법인에 출자하고 분할법인의 상대방법인이 존속하는 '흡수분할합병'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2 이상의 법인이 공동사업부문을 출자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소멸하는 '소멸신설분할합병' 및 분할법인이 분할합병 후 각각 존속하는 '존속신설분할합병'으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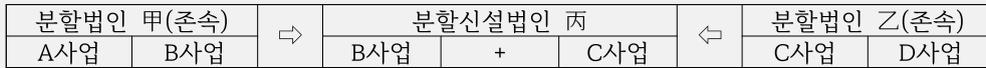
① 분할법인의 상대방법인이 존속하는 경우(흡수분할합병)



②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소멸신설분할합병)



③ 분할법인이 분할합병 후 각각 존속하는 경우(존속신설분할합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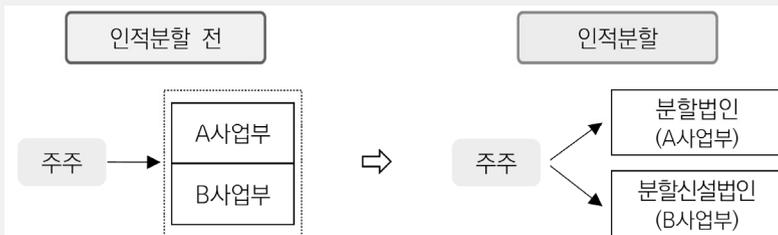
나.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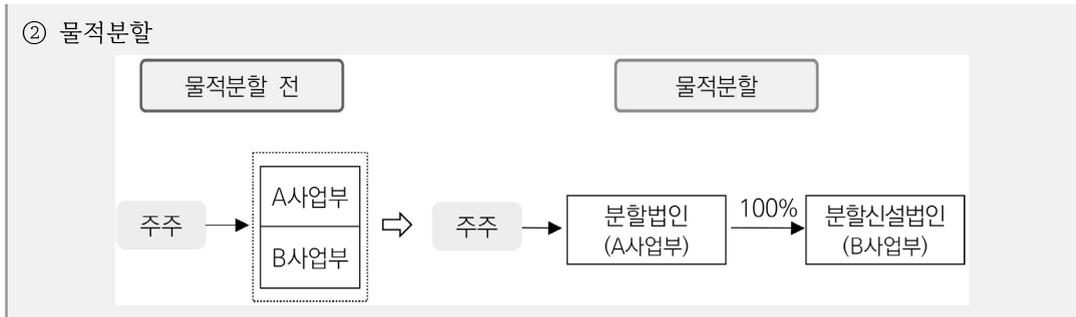
분할은 분할대가(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의 주식 등)가 누구에게 귀속되느냐에 따라 인적분할과 물적분할로 구분된다.

"인적분할"이란 분할대가를 분할법인(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교부받는 경우를 말하며, "물적분할"이란 분할대가를 분할법인이 전부 교부받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인적분할은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의 주주가 되며, 물적분할은 분할법인의 기존 주주는 분할법인의 지분을 그대로 보유하고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하게 된다.

① 인적분할





3. 분할의 절차

분할의 주요 절차로는 ① 이사회결의 및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작성 → ②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등 → ③ 분할승인 주주총회 → ④ 분할합병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및 매수 → ⑤ 채권자보호절차 → ⑥ 보고총회(창립총회) 및 분할등기 등이 있음

가. 이사회결의 및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작성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결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회사가 분할함에 있어 분할하고자 하는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의 범위와 그 가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이사회결의 후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상법」 § 530의3①), 분할의 경우 분할계획서 기재사항은 「상법」 제530조의5에 명시되어 있고, 분할합병에 따른 분할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은 「상법」 제530조의6에서 정하고 있다.

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등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요사항보고서(구 분할신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 161①6).

주권상장법인이 포함된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가액 산정은 주권상장법인이 포함된 합병시의 합병가액 산정기준을 준용하며(「자본시장법 시행령」 § 176의6② 및 § 176의5①), 분할합병의 대상이 되는 법인이 비상장법인인 경우 분할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 176의6③).

다. 분할승인 주주총회

분할에 대한 승인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얻어야 하며, 의결권이 배제된 주주도 의결권이 인정되며(「상법」 § 530의3①~③),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합병 당사회사 모두의 주주총회 승인결의가 있어야 한다.



라. 분할합병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및 매수

분할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있는 때에 주주총회 전 회사에 대하여 분할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마. 채권자보호절차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어 채권자 보호절차가 필요가 없다(「상법」 §530의9①).

그러나,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다.

즉, 단순분할은 원칙적으로 채권자보호절차가 적용되지 않지만 분할 후 회사가 연대책임을 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채권자가 회사의 담보재산의 감소로 인한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분할되는 회사의 채권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상법」 §530의9).

바. 보고총회(창립총회) 및 분할등기

분할에 따른 보고총회(창립총회)는 합병의 경우를 준용하며(「상법」 §526, §527, §530의11), 합병에 따른 합병등기 규정(「상법」 §234, §528)도 분할에 준용한다(「상법」 §530의11).

2 분할에 대한 법인세 과세체계

1. 연혁

2010년 6월 30일 이전 분할은 인격의 승계로 보아 청산소득, 분할평가차익에 대하여 과세하였으나, 2010년 7월 1일 이후 분할은 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손익에 대한 과세체계로 개편하였음

2009년 글로벌 경기 침체 하에서 경제체질 개선 및 금융부실 확산 방지 등을 위한 구조조정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합병·분할 등 상시적 조직재편 지원 체계를 정비하여 조직재편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합병·분할 등 구조조정 과세체계를 대폭 개선하였으며, 2010년 7월 1일 이후 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새로운 과세체계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중전에는 법인이 인적분할 하는 경우 분할법인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분할법인에 대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분할신설법인의 분할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과세하도록 하였다.

분할법인이 분할 후 소멸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산의 가치증가분(미실현이익)이 실현되었다고 보고 분할법인은 청산소득으로 하여 일반소득과 구분하여 과세하되, 특례요건 충족

시 분할대가 중 분할교부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를 최소화하였다.

분할법인의 청산소득 = 분할대가 총계(분할교부금 + 분할교부주식 + 포함주식) - 분할법인의 자기자본 총액

* 분할교부주식 평가 : (비특례) 시가, (특례) 액면가액

* 포함주식 : 분할일 전 2년내 분할합병의 상대방인 등이 취득한 분할법인 주식

분할법인이 분할 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분할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성격상 청산소득에 해당되나 분할법인 자체가 존속하고 있으므로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으며, 분할사업부문의 소득을 청산소득 방식에 의하여 계산하되 그 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분할소득 = 분할대가 총계(분할교부금 + 분할교부주식 + 포함주식) -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 총액

분할법인의 주주는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하되, 특례요건 충족 시 분할대가 중 분할교부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를 최소화하였다.

의제배당소득 = 분할대가(분할교부금 + 분할교부주식) - 분할법인 주식(존속분할은 감소된 주식에 한함)의 취득가액

* 분할교부주식 평가 : (비특례) 시가, (특례) 액면가액

분할신설법인은 분할차익 중 분할평가차익에 대해 과세하되, 특례요건 충족 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한하여 과세이연을 적용하며, 압축기장충당금(토지), 일시상각충당금(감가상각자산)을 설정하여 과세이연하고 자산 처분 또는 감가상각시 충당금과 상계하도록 하였다.

분할평가차익 = 자산 승계가액 - 분할법인의 자산 장부가액 - 분할법인의 청산소득

* 분할차익 범위 내에서 분할평가차익 익금산입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전의 과세체계는 분할법인의 경우 분할을 청산으로 보아 청산소득을 별도로 산정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구분하여 과세하고, 청산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분할신설법인 단계에서 분할평가차익으로 과세하도록 하는 등 과세 체계가 복잡하고 다단계로 이루어졌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10년 7월 1일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는 분할을 자산의 유상 양도로 보아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대가를 받고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도록 과세체계를 개편하였으며, 2010년 7월 1일 전·후 분할시 분할당사자별 과세체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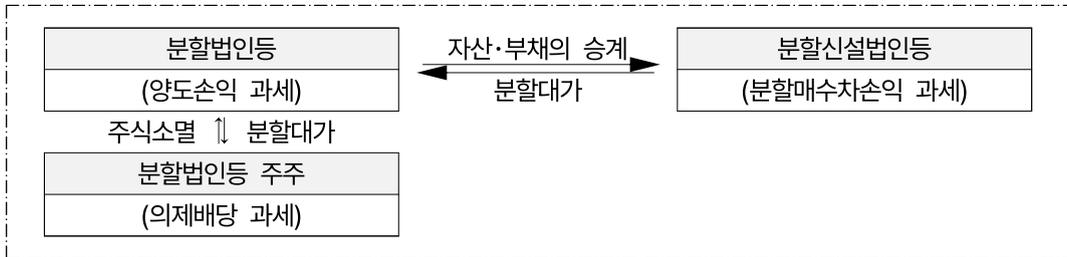
2010.7.1. 전·후 분할당사자별 과세체계

구 분	2010.6.30. 이전 분할	2010.7.1. 이후 분할
분할법인	① 청산소득(또는 일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① 양도손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 순자산 장부가액)
분할법인의 주주	① 분할대가에 대한 의제배당 ㉠ 과세이연요건 충족 시 분할대가로 받은 주식의 평가 : 액면금액 ㉡ 과세이연요건 미충족 시 분할 대가로 받은 주식의 평가 : 시가 ② 불공정분할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증여세 과세	① 분할대가에 대한 의제배당 ㉠ 적격분할요건 충족 시 분할대가로 받은 주식의 평가 : 장부가액(취득가액) ㉡ 적격분할요건 미충족 시 분할대가로 받은 주식의 평가 : 시가 ② 불공정분할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증여세 과세
분할 신설법인	① 분할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② 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 ③ 준비금 등 세무조정사항 및 공제·감면세액 승계	① 분할매수차손익(순자산시가 - 양도가액) 과세 ㉠ (순자산시가 > 양도가액) 5년간 균등 익금산입 ㉡ (순자산시가 < 양도가액) 5년간 균등 손금산입 ② 적격분할 시 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 ③ 적격분할 시 준비금 등 세무조정사항 및 공제·감면세액 승계
분할신설법 인의 주주	① 분할차익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② 불공정분할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증여세 과세	① 분할차익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② 불공정분할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증여세 과세

한편, 물적분할의 경우 2010.7.1. 전·후 분할에 대하여 큰 폭의 과세체계 변경없이 기본적으로 종전의 과세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2. 기본 과세체계

가. 인적분할 과세체계



(1) 분할법인등의 양도손익 과세체계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은 자산과 부채를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이전시키고 분할신설법인등은 분할법인등에게 분할대가를 지급한다.

이 경우 분할법인등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와 순자산 장부가액의 차액을 양도손익으로 과세한다.

양도손익 =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2) 분할신설법인등의 분할매수차손익 과세체계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로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아 분할매수차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의 분할매수차손익은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분할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분할매수차손익 =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시가 - 분할법인등에 지급한 양도가액

(3) 분할법인등의 주주에 대한 과세체계

분할법인등의 주주는 분할법인등의 구주식을 반납하고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분할신설법인등의 신주와 교부금 등 분할대가를 받게 된다.

이 경우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받은 분할대와 구주식의 취득가액의 차액을 의제배당으로 과세한다.

의제배당 =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시가) - 분할법인등의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구주식의 취득가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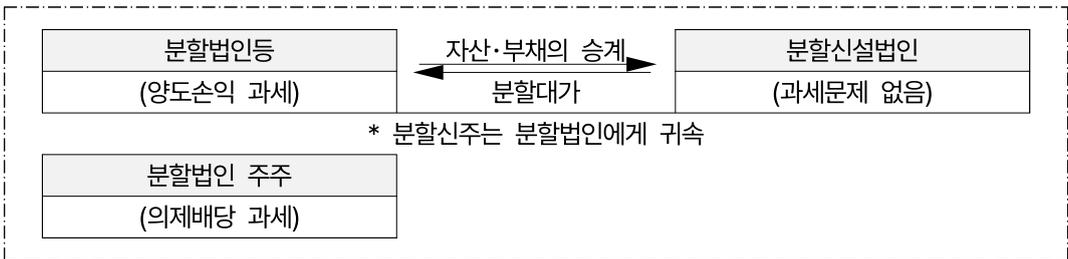
(4) 적격분할에 따른 특례

적격분할 요건 충족 시 분할법인등의 양도손익, 분할법인등 주주의 의제배당 및 분할신설법인등의 분할매수차손익을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를 이연한다.

따라서 적격분할 시에는 분할시점에 과세하지 않고, 분할시점 이후로 과세를 이연할 수 있다.

구 분		비적격분할(원칙)	적격분할(특례)
분할법인등		양도손익 과세 = 양도가액* - 순자산장부가액(자산-부채) * 양도가액 = 분할대가	양도가액 = 순자산 장부가액 ⇒ 양도손익 = 0
분할법인등의 주주		의제배당과세 = 분할대가* - 구주식의 취득가액 * 주식으로 받은 경우 : 시가	주식으로 받은 경우 분할대가 = 구주식의 취득가액 ⇒ 의제배당 = 0
분할신설법인등	자산승계	시가로 승계	장부가액으로 승계 * 시가와외의 차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 후 해당자산의 처분·감가상각 시까지 과세이연
	결손금, 세무조정 사항 등	승계 불가(단, 세무조정사항 중 퇴직급여충당금·대손충당금 관련사항은 승계 가능)	승계 가능(단,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결손금 승계 불가)
	분할매수차 손익	과세(5년간 균등분할 손익 인식)	미발생

나. 물적분할 과세체계



(1) 분할법인의 양도손익 과세체계

물적분할은 분할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분할을 말하는 것으로서 분할법인의 자본감소 없이 자산을 출자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점에서 상법상 분할절차를 따르는 것 외에는 현물출자방식에 의한 자회사 설립의 경우와 유사하다.

따라서 내국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 분할법인은 분할대가로 지급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시가에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순자산 장부가액의 차액을 분할법인의 양도손익

으로 과세한다.

$$\text{양도손익} = \text{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시가(분할대가)} - \text{순자산 장부가액}$$

(2)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과세체계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로 취득한 자산을 시가로 평가하며, 현물출자를 받고 설립된 경우와 유사하므로 취득한 자산의 시가와 발행한 주식의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주식발행초과금에 해당한다.

한편, 물적분할은 하나의 당사자의 내부거래(조직변경)에 불과하고 분할사업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분할법인이 계속 보유하므로 양도자산과 양도대가(주식)가 다를 수 없으므로 인적분할과 달리 분할매수차손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3) 분할법인 주주에 대한 과세체계

내국법인이 물적분할을 할 경우 분할대가가 분할법인 자체에 귀속되므로, 분할대가를 분할법인의 주주가 지급받는 인적분할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분할법인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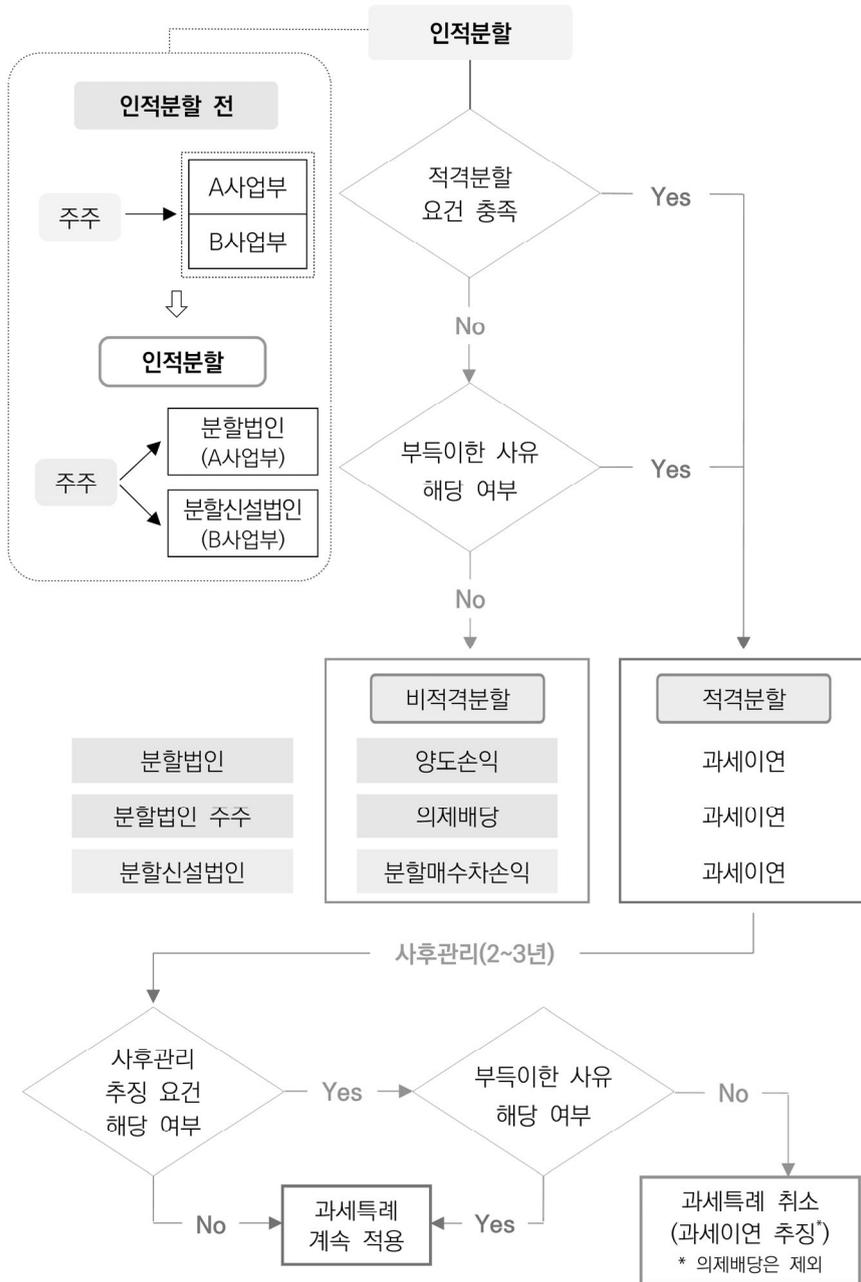
(4) 적격물적분할에 따른 특례

적격물적분할 요건 충족 시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주식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따라서 적격물적분할 시에는 분할시점에 과세하지 않고, 분할시점 이후로 과세를 이연할 수 있다.

구 분	비적격물적분할(원칙)	적격물적분할(특례)	
분할법인	양도손익 과세 = 양도가액* - 순자산장부가액(자산-부채) * 양도가액 = 분할대가	양도손익 과세* = 양도가액 - 순자산 장부가액 *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 산입 → 과세이연	
분할법인의 주주	미발생	미발생	
분할 신설 법인	자산승계	시가로 승계	시가로 승계
	결손금	승계 불가	승계 불가
	세무조정사항	퇴직급여충당금·대손충당금 관련 사항만 승계 가능	퇴직급여충당금·대손충당금 관련 사항만 승계 가능
	공제·감면세액	승계 불가	승계 가능
	분할매수차손익	미발생	미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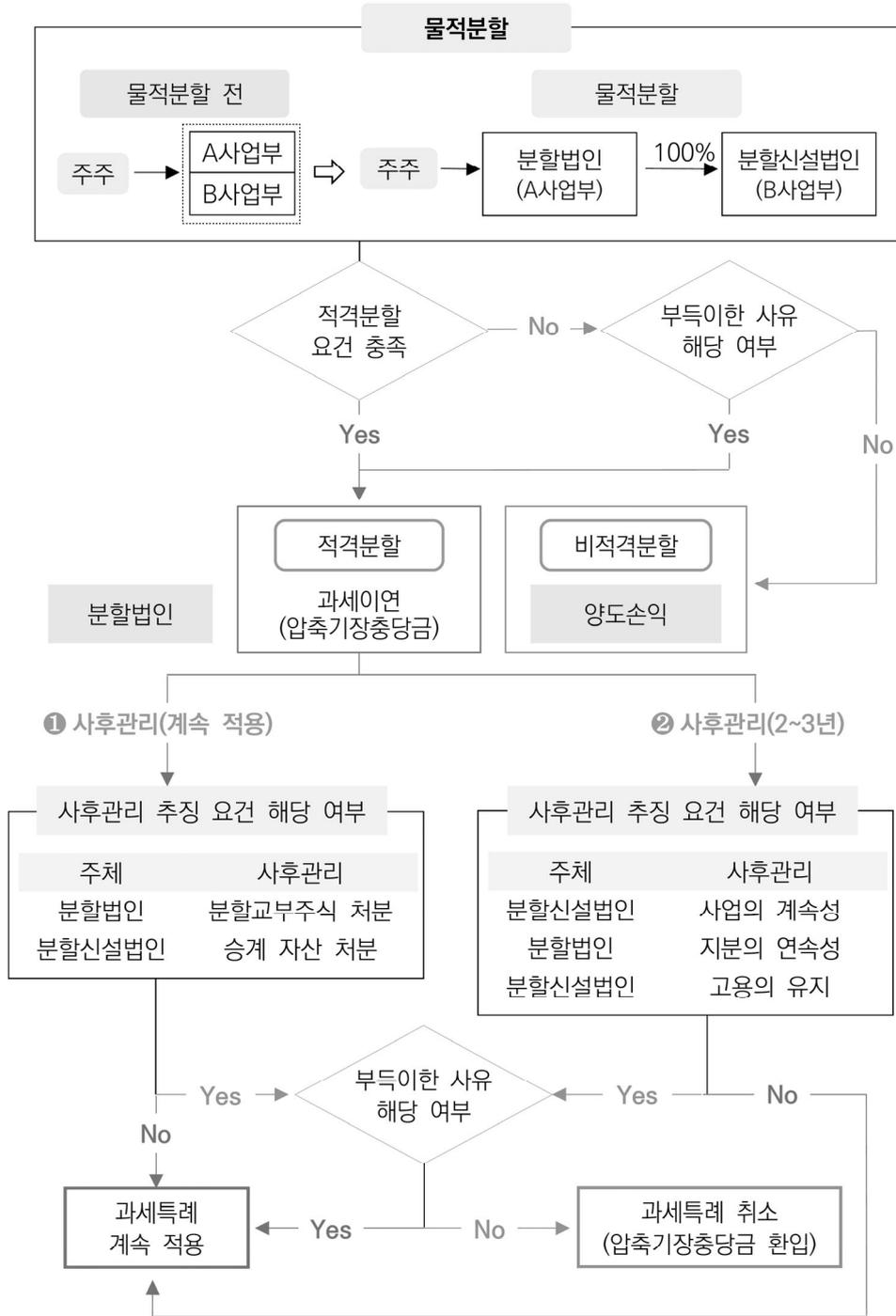
<인적분할 과세체계 요약>



〈비적격인적분할과 적격인적분할 과세 비교〉

구 분		비적격인적분할(원칙)	적격인적분할(특례)
분할법인등		양도손익 과세 = 양도가액* - 순자산 장부가액(자산-부채) * 양도가액 = 분할대가	양도손익 = 순자산 장부가액 - 순자산 장부가액 ⇒ 양도손익 = 0
분할법인등의 주주		의제배당과세 = 분할대가* - 구주식의 취득가액 * 주식으로 받은 경우 : 시가	주식으로 받은 경우 분할대가 = 구주식의 취득가액 ⇒ 의제배당 = 0
분할 신설 법인 등	자산승계	시가로 승계	장부가액으로 승계* 시가와와의 차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 후 해당자산의 처분·감가상각 시 까지 과세이연
	결손금	승계 불가	승계 가능(단,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결손금 승계 불가)
	세무조정 사항	퇴직급여충당금·대손충당금 관련 사항만 승계 가능	승계 가능
	공제·감면세액	승계 불가	승계 가능
	분할매수차손익	과세(5년간 균등분할 손익 인식)	미발생

<물적분할 과세체계 요약>



<비적격물적분할과 적격물적분할 과세 비교>

구 분		비적격물적분할(원칙)	적격물적분할(특례)
분할법인		양도손익 과세 = 양도가액* - 순자산 장부가액(자산-부채)* 양도가액 = 분할대가	양도손익 = 양도가액 - 순자산 장부가액
		양도손익 전액 과세	과세이연(압축기장충당금*) * 압축기장충당금 = Min(①, ②) ①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시가 ②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시가 - 장부가액)
분할법인의 주주		미발생	미발생
분할신설법인	자산승계	시가로 승계	시가로 승계
	결손금	승계 불가	승계 불가
	세무조정사항	퇴직급여충당금·대손충당금 관련사항만 승계 가능	퇴직급여충당금·대손충당금 관련사항만 승계 가능
	공제·감면세액	승계 불가	승계 가능
	분할매수차손익	미발생	미발생